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중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EU) 조치사항 등을 반영해 사용 시 주의사항에 표시 문구를 신설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8호, 2014. 2. 12)을 개정 고시했다. 다음에 주요내용과 부칙 등에 관해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문구 신설(별표)

1)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등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영·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용 제품류(만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하지 말도록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신설

2) 위해평가 결과, 제외국 현황 등을 반영하여 주의사항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함.

나.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 일부 기재사항 문구 조정(별표)

1)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 제품 등 12개 성분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시행규칙(총리령 제1322호) 부칙 제2조(화장품의 포장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호는 시행규칙 시행일과 상관없이 본 개정고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화장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별표)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사용시의 주의사항 표시 문구(제2조 관련)

연번	대상제품	표시 문구
1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 제품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2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3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파우더 제품에 한함)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샴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 제외)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5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6	아이오도프로필부틸카바메이트(IPBC) 함유 제품(목욕용 제품,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 제외)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7	알루미늄 및 그 염류 함유 제품(체취방지용 제품류에 한함)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 약사, 한의사와 상의할 것
8	알부틴 2% 이상 함유 제품	알부틴은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9	카민 함유 제품	카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10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	코치닐추출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11	포름알데하이드 0.05% 이상 검출된 제품	포름알데하이드 성분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12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2% 이상 함유 제품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는 「인체적용 시험자료」에서 경미한 발적, 피부건조, 화끈감, 가려움, 구진이 보고된 예가 있음
13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또는 이소프로필파라벤 함유 제품(영·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용 제품류(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한함)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